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발행인·편집인 변경 시 20일)	
등록번호		간행물명		간별	
발행인 주소	(전화:)				
변경사항	현재 신고된 내용		변경 신고할 내용		

변경사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발행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고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변경사항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단체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쇄인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 행 소	법인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단체·개인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사항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